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3-2249호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고양시 공고 제2023-2250호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양시 공고 제2023-2254호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7
고양시 공고 제2023-2255호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고양시 공고 제2023-2259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6
고양시 공고 제2023-2260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51
고양시 공고 제2023-2262호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고양시 공고 제2023-2263호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고양시 공고 제2023-2265호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고양시 공고 제2023-2267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고양시 공고 제2023-2268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01
고양시 공고 제2023-2269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32
고양시 공고 제2023-2270호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7
고양시 공고 제2023-2271호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6

차 례

고양시 공고 제2023-2273호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6
고양시 공고 제2023-2274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0
고양시 공고 제2023-2275호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7
고양시 공고 제2023-2276호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
고양시 공고 제2023-2277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0
고양시 공고 제2023-2279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97
고양시 공고 제2023-2280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0
고양시 공고 제2023-2281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4
고양시 공고 제2023-2289호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3

공 고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공고
제2023-46호

2023년 8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63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사무가 특례시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류단지 지정 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위원회 구성: 20 ~ 40명(위원장: 호선)
 -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 10~20명, 금융 또는 회계 분야 10~20명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업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5층 기업지원과
- 전 화 : 기업지원과 지식산업센터팀(031-8075-3576)
- 팩 스 : 031-8075-491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7에 따라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토목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추천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소집에 관한 특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최초 소집은 시장이 한다.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입 안 자	과 성 명	기업지원과장 김 봉 민
	팀 성 명	지식산업센터팀장 윤 영 용
	담 당 자 성명·전화	윤 영 용 031-8075-3576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 6. 13.시행)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 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을 1인 가구로 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복지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복지정책과)

- 전 화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8075-3238)

- 팩 스 : 031-8075-491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판단되는 사람”을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 중 “위하여 필요하면” 을 “위하여” 로 하고, “실시하고” 를 “실시할 수 있으며” 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을 “경제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앓는 1인 가구 중” 을 “앓으며”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고독사 위험자” 를 “고독사위험자” 로 한다.

시장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고독사 위험자” 를 각각 “고독사위험자” 로 한다.

제9조 중 “구축하여야” 를 “구축해야” 로 한다.

제10조 중 “기여한” 을 “이바지한” 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복지정책과장 유 선 준
	팀장 성명	복지정책팀장 최 상 덕
	담당자 성명·전화	이 규 연 031-8075-323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던 공간에서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4.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의 파악, 고독사 발생위험의 사전예방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삭제>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 ----- -----가구 -----. 4. (현행과 같음) ① ----- -----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 -----시행해야-----. ② ----- ----- -----시행해야-----.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u>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u>시행하여야</u> 한다. 1.~9. (생략)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u>위하여</u>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u>실시하고</u>,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지원대상) <u>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u> 1. <u>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u> 2. <u>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u> 3. <u>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u> 4. (생략) 제8조(지원사업) (생략) 1. <u>고독사 위험자</u>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u>고독사 위험자</u>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 -----<u>조례에서</u>-----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 ----- -----<u>시행해야</u>-----. 1.~9.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 ----- -----<u>위하여</u>----- <u>실시할 수 있으며</u>-----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u>시장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u> 1. <u>경제적</u>----- ----- ----- 2. -----<u>않으며</u>----- ----- 3. ----- -----<u>고독사위험자</u> 4. (현행과 같음) 제제8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u>고독사위험자</u>----- ----- 2. <u>고독사위험자</u>-----
---	--

지원 3.~6. (생 략)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u>구축하여야</u>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u>기여한</u>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3.~6.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 ----- ----- ----- -----<u>구축해야</u>-----. 제10조(포상) ----- -----<u>이바지</u> <u>한</u>----- -----. <삭 제>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지킴이”를 “안전보안관”으로 전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 안전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안전보안관의 자격 등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안전보안관 연합대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4조).
- 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난대응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4층

- 전 화 :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031-8075-3014)

- 팩 스 : 031-8075-499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안관”이란 고양시 관내의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고양시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되,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려하여 동(洞)별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마다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를 둔다.

④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1년 이내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제4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지역 안전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시 안전보안관 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안전보안관 대표를 위원으로 한다.

② 연합대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연합대의 대표와 부대표는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연합대의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연합대는 제5조에 따른 각종 활동을 주관하며, 각 동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①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동의 안전보안관 대표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피복비, 소모성 장비, 순찰차량 유지 경비 등
2.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연합대 사업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 및 장비 등은 안전보안관 활동 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연도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보안관 등록대장에 안전보안관 위촉·해촉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등) ①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안전보안관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안관 및 시민안전지킴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민안전지킴이는 제 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조례의 시행일을 최초로 위촉된 날로 보아 임기를 계산한다.

제3조(연합대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연합대 대표 및 부대표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연합대 대표 및 부대표는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소관부서		재난대응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재난대응담당관 박 성 완
	팀 장 성 명	사회재난팀장 김 주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태 현 031-8075-3014

안전보안관 지원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주민등록지)			
E-mail			
활동지원 동			
자격증	☐ 유	자 격 증 종 류 ☒	
		☐ 산업안전 ☐ 건설 ☐ 가스 ☐ 전기 ☐ 건축 ☐ 토목 ☐ 소방 ☐ 위험물 ☐ 방재 【명칭 : 】	
	☐ 무		
지원사유			

「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에 지원합니다.

202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작성자용)

고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양시 안전보안관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 (1) 고양시에서는 다음 목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시 신청자 식별(신청자격 확인), 선발결과 통보 등
- (2) 고양시 안전보안관 구성·운영 관련 안전활동 자료통계, 실적, 포상 등 본연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집·활용 개인정보

[필수 정보]	[선택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안전관련 자격증

3. 개인정보 보유·활용 기간

- (1)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부터 보유하며, 동의를 철회 또는 회원 탈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관련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1)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2)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활용을 거부하실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고양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동) 안전보안관 활동일지

대 표

□ 활동일자: 년 월 일 ()요일

※ 수기로 작성

[illegible]

(동) 안전보안관 등록대장

연번	직위	성명	위촉일	해촉일	시설 · 장비	안전보안관증 발급 여부 (발급일)	해당 동 거주여부
1	대표	김고양	2023.05.08	-	안전보안관 모자 1개	발급 (2023.05.23.)	0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시민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과 안전문화운동에 시민 자율적 참여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지킴이”란 안전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시민조직을 말한다. 2. “시민안전지킴이 연합대”란 각 동별 시민안전지킴이의 대표를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범죄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안관”이란 고양시 관내의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신청 및 등록) ① 시민안전지킴이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해당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여부 등을 확인·검토하고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민안전지킴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고양시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되,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려하여 동(洞)별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현행	개정안
③ <u>시민안전지킴이 대표는 시민안전지킴이가 해산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전에 발급받은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u> ④ <u>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민안전지킴이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u> ⑤ <u>시장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제4조제1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	<u>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u> 3. <u>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u> 4. <u>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u> 5.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② <u>안전보안관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③ <u>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마다 안전보안관 대표 와 부대표를 둔다.</u> ④ <u>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u> ⑤ <u>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1년 이내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u>
제5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 ① <u>시민안전지킴이는 지역 안전 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안전지킴이 연합대(이하 “연합대”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u> ② <u>연합대는 고양시와 협력하여 합동점검,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주관할 수 있다.</u> ③ <u>연합대는 각 동 시민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지원·지도하여야 한다.</u>	제4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 ① <u>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지역 안전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시 안전보안관 연합대(이하 “연합대”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안전보안관 대표를 위원으로 한다.</u> ② <u>연합대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연합대의 대표와 부대표는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u> ③ <u>연합대의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④ <u>연합대는 제5조에 따른 각종 활동을 주관하며, 각 동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제3조(임무) ① 시민안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시민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u> <u>2. 민관협력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u> <u>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시민 안전홍보</u> <u>4. 시민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u> <u>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u> <u>6. 여성 및 청소년안심귀가 서비스 지원활동</u> <u>7. 학생의 안전한 등교·하교 지원활동</u> <u>8. 청소년 안전생활 지원활동</u> <u>9.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활동</u> <u>10. 경찰서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u> <u>11. 안전생활위험 요소(보도블록 파손, 썩크홀, 무단투기 쓰레기, 환경위해 요소 등) 점검 및 신고 활동</u> <u>12. 그 밖에 시민안전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u> <u>② 시민안전지킴이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	<u>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①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u> <u>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u> <u>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u> <u>3.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u> <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각 동의 안전보안관 대표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일지를 기록해야 한다.</u>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재난대책본부의 구성을 변경하고, 각종 재난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괄조정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단순화함(안 제8조).
- 나.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을 재정비함(안 제8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난대응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4층 재난대응담당관
- 전 화 :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031-8075-3014)
- 팩 스 : 031-8075-499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받은”을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5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있으며,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등과 같이”를 “있으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차장, 통제관, 총괄조정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할 것
2. 차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할 것
3. 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를 둔 실·국·소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할 것
4. 총괄조정관은 재난대응담당관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것
5.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할 것

6. 실무반은 시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대응 및 수습 업무를 수행할 것. 다만,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의 편성은 조정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8조제3항제7호”를 “제8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관기관”을 “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지원관”을 “총괄조정관”으로, “재난담당관”을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을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우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및”을 “경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를 “구분하여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라 다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고양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고양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통합지원본부 설치와 운영”을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관련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있도록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등”을 “있도록”으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를 “수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난대응담당관
입 안 자	과장 성명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팀장 성명	사회재난팀장 김주영
	담당자 성명·전화	김태현 031-8075-301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임된----- ----- ----- ----- ----- ----- -----.
제2조(정의) (생략) 1.~3. (생략) 4. (생략) 가. (생략) 나. 겨울철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7. (생략) 8.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란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9.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이란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11월 15일----- ----- 5.~7.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④ (생략) 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과 실시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따라야-----.

제4조(시민의 권리) ①~② (생략)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등과 같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련 민간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차장, 통제관, 총괄지원관, 대응복구관, 재난담당관, 대응복구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를 둔 실·국·소장으로 하며, 차장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총괄지원관은 대책본부의 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통제관이 그 직을 겸임한다.
5. 대응복구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6. 재난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총괄지원관)을 보좌한다.
7. 대응복구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 대응과 복구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8. 실무반은 시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

제4조(시민의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있으며,-----

-----.

제8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차장, 통제관, 총괄조정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할 것
2. 차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할 것
3. 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를 둔 실·국·소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할 것
4. 총괄조정관은 재난대응담당관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것
5.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할 것
6. 실무반은 시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대응 및 수습 업무를 수행할 것. 다만,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의 편성은 조정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의 편성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수습 등을 위한 대책본부는 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 통제관, 총괄지원담당관, 재난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2.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3.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4. 법 제3조제1호가목 중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③ 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괄지원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를 둔 실·국·소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를 둔 실·국·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총괄지원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총괄지원관을 보좌한다.
6. 재난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7. 실무반은 시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복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의 편성은 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총괄지원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기준,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③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1조(상황판단회의) ① (생략)

제10조(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

-----제8조제1항제6호-----

-----.

② (현행과 같음)

③ -----

----기관-----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상황판단회의) ① (현행과 같음)

1.~3. (생 략)

4. 재난관리책임기관 ·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생 략)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차장 · 총괄지원관 · 통제관 및 재난담당관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생 략)

1.~2. (생 략)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

4. (생 략)

제12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8조(재난 예보 · 경보의 실시 등) ①~② (생 략)

③ (생 략)

1.~3. (생 략)

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생 략)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및 민간단체에 재난현장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관계 기관-----

5. (현행과 같음)

② -----
-----총괄조정관-----
-----담당관-----
--.

③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관계 기관-----

4.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재난 예보 · 경보의 실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미리-----

제20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우-----

-----.

③~④ (생 략) 제2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생 략) 1.~3. (생 략)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u>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수습현황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생 략) ②~⑤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 ----- ----- ----- -----구분하여 보고해야-----. <삭 제> 제2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 ----- 따라 다음-----. 1.~5.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제2장 고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제3장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와 운영	제2장 고양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제3장 ----- 통합지원본부
제41조(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① (생 략)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8. (생 략) 제43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제41조(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때----- ----- --. 1.~8. (현행과 같음) 제43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 -----위하여-----

각 호와 같이 통합지원본부를 통합지원본부장, 현장지원관, 실무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② (생 략) 제64조(재난대비 훈련) ① 시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난수습 관련 <u>유관기관과</u>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68조(복구활동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u>유관기관에</u> 통신·전기·가스 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u>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u> 등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74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 ② (현행 제1호와 같음) ③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현행 제3호와 같음)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4조(재난대비 훈련) ① ----- ----- ----- -----<u>관계 기관</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8조(복구활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관계 기관</u>----- ----- --. 제69조(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있도록</u>----- ----- -----.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 ----- -----<u>수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u>----- -----.
---	---

1.~2. (생 략) <u>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u> <u>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198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12.31.) 만료 및 중앙 및 공공기관의 유사 사업 시행에 따른 해당 사업의 실효성 저하 및 신청자 수 급감으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복지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1층

- 전 화 : 복지정책과 자립지원팀(031-8075-3510)

- 팩 스 : 031-8075-491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채권·채무 등 이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는 고양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되어 온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고양시 일반회계에 귀속하고, 매년 상환되는 융자금 회수원금 및 이자금 등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3조(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 중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 융자금관리심사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복지정책과장 유 선 준
	팀장 성명	자립지원팀장 이 선 화
	담당자 성명·전화	이 정 래 (031-8075-3510)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이유

-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복지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1층

- 전 화 : 복지정책과 자립지원팀(031-8075-3510)

- 팩 스 : 031-8075-491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 중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팀장 성명	자립지원팀장 이선화
	담당자 성명·전화	이정래 (031-8075-3510)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전략산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전략산업과 전략산업팀(031-8075-3526)

- 팩 스 : 031-8075-491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더불어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고양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5. 창업·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바이오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4. 기업 창업·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6. 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사업
 7.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포상)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전략산업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전략산업과장 김 형 기
	팀 성 장 명	전략산업팀장 김 문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주 희 031-8075-3526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비함(안 제3조).
- 나. 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비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로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로정책과 공동구관리팀(031-8075-2883)

- 팩 스 : 031-908-907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률” 을 “법”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 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정부기관에 등록된” 을 “신고한”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동구관리협의회)” 를 “(공동구협의회)” 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고양시공동구관리협의회” 를 “고양시 공동구협의회” 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하고, 제5조(중전의 제6조) 및 제6조(중전의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구 점용·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를 관리하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1항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회”를 “개의(開議)”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직, 성명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의회 의결서

제11조제2항 중 “소요된” 을 “필요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도별 생산자 물가지수(총 지수)』와 『시설물 감가상각률』” 을 “연도별 생산자 물가지수(총 지수)와 시설물 감가상각률”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요되는” 을 각각 “필요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 한다” 를 “징수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점·사용자” 를 “점용자 또는 사용자” 로, “점·사용료” 를 각각 “점용료 또는 사용료” 로, “수용기관에게” 를 “수용기관에” 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3월말까지 한다” 를 “3월 31일까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일까지로 한다” 를 “전일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월 말과 9월 말” 을 “3월 31일과 9월 30일” 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구관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고양시공동구관리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양시 공동구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양시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도로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로정책과장 서 윤 하
	팀 장 성 명	공동구관리팀장 임 정 빈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환 희 031-8075-288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u>법</u>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4. (생략) 제3조(공동구의 관리) ①~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u>정부기관에</u> 등록된 기계 및 전기부문 전문분야 관리업 체이어야 한다. 제4조(공동구관리협의회)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점검,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u>고양시공동구관리협의회</u>(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구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공동구의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공동구의 신규시설물 점용(사용)여	제1조(목적) ----- ----- -----<u>법</u>----- ----- ----- ----- ----- -----. 제2조(정의) ----- -----<u>뜻은</u>-----.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2.~4. (현행과 같음) 제3조(공동구의 관리)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 -----<u>신고한</u>----- -----. 제4조(공동구협의회) ----- ----- ----- -----<u>고양시 공동구협의회</u>-----.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

부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공사시기, 공사내용, 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를 관리하는 고양시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
3. 공동구 점용기관의 임·직원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점용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에 관한 사항

4. 공동구 점용·사용의 허가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를 관리하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
-----임시회의-----
-----.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구관리담당팀장으로, 서기는 공동구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직, 성명
3. 협의회 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제11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해당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 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또는 점용예정체적(이하 “점용예정면적”이라 한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점용예정면적은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 기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한국은행발표 『연도별 생산자 물가지수(총 지수)』와 『시설물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1.~2. (생략)

④ (생략)

제12조(관리비 등) ① 공동구를 점용하는 해당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개축, 유지, 재해복구, 조명, 배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시설비, 인

② -----
-----개 의(開議)-----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직, 성명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의회 의결서

제11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필요한-----

-----.

③ -----

-----연도별 생산자 물가지수
(총 지수)와 시설물 감가상각률-----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리비 등) ① -----
-----필요한-----

-----필요한-----

건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공동구를 점용한 자가 함께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비 총액에 대하여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신규 점·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는 여유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게 100분의 50을 나머지 100분의 50은 기존의 공동구 점용자의 관리비로 충당하고 총 소요비용에서 점·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관리비 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부과·징수) ①~② (생략)

③ (생략)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최초 연도분은 공동구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분부터는 해당 연도 3월말까지 한다.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공동구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한다.

④ 제12조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하여 징수하되, 납부기한은 매년 3월 말과 9월 말로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관리비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② -----

-----징수한다.

③ -----점용자 또는 사용자-----점용료 또는 사용료-----수용기관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
-----.

제13조(부과·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월 31일까지

2. -----
-----전일까지

④ -----
-----3월 31일과 9월 30일-----.

<삭제>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나.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및 별표).
- 다.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비함(안 제11조 제2항).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로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주교동, 고양시청 제2별관)

- 전 화 : 도로정책과 건설행정팀(031-8075-2842)

- 팩 스 : 031-8075-492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건설산업”을 “이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으로, “규정하여”를 “규정하여 고양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이란 법 제10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 또한,”을 “하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를 “대하여”로, “공구분할”을 “공구(工區)분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리계약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조사)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 장비 · 사무실, 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4. 일시적인 사무실 운영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로 정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경기도와 고양시 등의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전문건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를 “시장은”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건설산업” 을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 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 을 “제2부시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 의회 의장이” 를 “고양시의회에서” 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4조제2항 중 “소집하고자” 를 “소집하려고” 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작” 을 “개 의(開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팀장으로 한다” 를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시내 건설관련” 을 “고양시 관내 건설 관련” 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도로정책과장 서 윤 하
	팀장 성명	건설행정팀장 조 승 현
	담당자 성명·전화	이 석 구 031-8075-2842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제7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제출 자료	비고(자료출처)
1. 기술능력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정보연계센터)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근로복지공단)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근로기준법
	고용계약서 사본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퇴직급여법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건설산업 기본법, 근로기준법
2. 자 본 금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포함)- 가장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 회사비치분 등)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의 해당 거래기간 계좌내역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각 공제조합)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업종별 등록관청 등)
3. 시설 및 장비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건설산업 기본법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비고: 건설사업자는 상기자료를 제출 할 수 없거나 상기자료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자료나 별도의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u>지역건설산업</u>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하</u> <u>여</u> <u>지역건설산업의</u> 육성과 <u>지역경제</u>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 략) 1. “지역건설산업”이란 「<u>건설산업 기본법</u>」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u>고양시</u>(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3. (생 략) <u><신 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u>건설산업기본법</u>」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u>지역건설산업체</u>의 지속적인 정비로 <u>지역건설산업의</u>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u>지역건설산업체와의</u>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건설산업</u>-----<u>규정하</u> <u>여</u> <u>고양시</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u>건설산업 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 -----. 2.~3. (현행과 같음) 4. “<u>등록기준 미달업체 등</u>”이란 법 제10조 및 「<u>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u>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u>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라 <u>건설기술인을</u> 배치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u>건설업체</u>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 ----- -----. ④ ----- ----- ----- ----- -----<u>하며</u>,----- -----

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5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u>공구분할</u> 또는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6조제2항을 적용한다. <신 설>	-----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분할발주 등) ① ----- ----- ----- -----대하여----- ----- ----- -----공구(工區)분할----- ----- -----.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리계약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제7조의2(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조사)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등
---	--

제9조(표준시장평가 적용 제한) 시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u>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u> <u>2.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u> <u>3.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u> <u>4. 일시적인 사무실 운영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u> <u>5. 그 밖에 시장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u> <u>②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로 정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u> <u>③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u> <u>④ 정부 또는 경기도와 고양시 등의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전문건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u> 제9조(표준시장평가 적용 제한) 시장은-----
---	--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2. (생략)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양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7. (생략)

제11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5. (생략)

제12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

그렇지

않다.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
은 지역건설산업-----

-----.

②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7.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부시장-----

-----.

1. (현행과 같음)

2. 고양시의회에서-----

3.~5. (현행과 같음)

제12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u>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3. <u>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u> 제14조(회의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이 회의를 <u>소집하고자</u>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u>그렇지 아니한다.</u>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시작하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u>팀장으로 한다.</u> 제16조(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포상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하여 <u>시내 건설 관련</u>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u>정하지 않은 사항은</u> 시에서 적용 관리하는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필요한 사항은</u> 규칙으로 정한다.	3. <u>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u> 제14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소집하려고</u>----- ----- ----- ----- <u>그렇지 않다.</u> ③ ----- -----<u>개의(開議)</u>----- -----. ④ ----- ----- -----<u>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u> 제16조(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포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고양시 관내</u> <u>건설 관련</u>----- -----. <삭 제> <삭 제>
---	---

현행	개정안																																		
<신설>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제7조의2제2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제출 자료</th><th>비고(자료출처)</th></tr><tr><td rowspan="7">1 기술능력</td><td>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td><td>건설업 관리규정 별지서식</td></tr><tr><td>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td><td>(한국건설기술인협회)</td></tr><tr><td>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td><td>(4대사회보험정보정보연계센터)</td></tr><tr><td>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td><td>(근로복지공단)</td></tr><tr><td>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td><td>근로기준법</td></tr><tr><td>고용계약서 사본</td><td>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퇴직급여법</td></tr><tr><td>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td><td>건설산업 기본법, 근로기준법</td></tr><tr><td rowspan="5">2 자본금</td><td>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포함) 가장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td><td>(국세청 홈택스, 회사비치분 등)</td></tr><tr><td>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의 해당 거래기간 계좌내역</td><td>(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td></tr><tr><td>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td><td>(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td></tr><tr><td>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정기연차 결산일 기준)</td><td>(각 공제조합)</td></tr><tr><td>등록업종 보유 신고서</td><td>(업종별 등록관청 등)</td></tr><tr><td rowspan="2">3 시설 및 장비</td><td>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 내역</td><td>건설산업 기본법</td></tr><tr><td>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td><td></td></tr></table>	구분	제출 자료	비고(자료출처)	1 기술능력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정보연계센터)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근로복지공단)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근로기준법	고용계약서 사본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퇴직급여법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건설산업 기본법, 근로기준법	2 자본금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포함) 가장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 회사비치분 등)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의 해당 거래기간 계좌내역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각 공제조합)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업종별 등록관청 등)	3 시설 및 장비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 내역	건설산업 기본법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구분	제출 자료	비고(자료출처)																																
	1 기술능력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정보연계센터)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근로복지공단)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근로기준법																																
		고용계약서 사본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퇴직급여법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건설산업 기본법, 근로기준법																																
	2 자본금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포함) 가장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 회사비치분 등)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의 해당 거래기간 계좌내역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각 공제조합)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업종별 등록관청 등)																																
	3 시설 및 장비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 내역	건설산업 기본법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비고: 건설사업자는 상기자료를 제출 할 수 없거나 상기자료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자료나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서관 시설·장비의 이용과 강좌 수강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서관 시설·장비의 이용과 강좌 수강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감면, 반환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16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 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독서 문화 진흥 관련 사항을 추가, 정비함
(안 제25조).
- 다.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과 반환기준을 규정함(별표 2 및 별표 3).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31-8075-9012)

- 팩 스 : 031-8075-489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5호, 제8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25조제2호 중 “도서관 자료”를 각각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10조 중 “이용자에게”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설의 이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시설 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표 2의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4.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5.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

도 또는 빌려줄 수 없다.

④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고, 재료비와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0조의2(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시설 이용자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이용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3(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와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고양시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고양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서운동계획 수립”을 “독서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입 안 자	과 성 명	덕양구도서관과 최 경 숙
	팀 성 명	도서관정책팀장 이 준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진 근 숙 031-8075-9012

[별표 2]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16조 및 제20조 관련)

1. 시설 및 장비 이용료

구분		면적	기준시간	이용 요금
시설	강의실	70㎡이하	1회 (2시간)	20,000원
		71㎡이상		30,000원
	시청각실		1회 (2시간)	50,000원
	미디어창작실		1회 (3시간)	15,000원
장비	미디어창작실 장비		1회 (3시간)	5,000원 ~ 10,000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장비		시간당	1,000원 ~ 5,000원
비고				
1. 이용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시간당 이용료를 초과시간에 따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 산정은 준비시간을 포함한다.				
3. 이용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2. 수강료

구분	기준	수강료	비고
도서관 강좌	1강좌 (4회 기준)	월 50,000원 이하	교재비·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

[별표 3]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20조의3 관련)

구 분		반환기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도서관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개시일 이전·이후 : 전액반환	
	수강료		
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개시일 7일 전까지	전액반환
		개시일 당일까지	90퍼센트 반환
	수강료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반환
		개시일 이후	수강 회차 단위로 경과한 회차 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총 수강 회차의 1/2 경과 이후 미반환
비고			
1.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함			
2. 수강료 반환금액의 산정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 경과한 수업 회차를 기 준으로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u>도서관 자료</u>”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생략) 제3조(기능) (생략) 1.~4. (생략) 5.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u>도서관 자료</u>의 상호대차 6.~7. (생략) 제8조(금전 등의 기부) ① 법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u>도서관 자료</u>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이용자에게</u>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5. (생략) 제12조(관외대출) ①~② (생략)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2. “<u>도서관자료</u>” ----- ----- ----- ----- ----- -----. 3. (생략) 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u>도서관자료</u>----- 6.~7. (현행과 같음) 제8조(금전 등의 기부) ① ----- ----- <u>도서관자료</u>-----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 ----- -----<u>경우에는</u>----- ----- -----. 1.~5. (현행과 같음) 제12조(관외대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고 인정되는 <u>도서관 자료</u>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6조(시설의 사용 등) ① <u>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u> ② <u>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u> <u>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u> <u>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u> <u>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u> <u>4.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u> <u>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u> <u>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 <u>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u> ③ <u>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u> <신설> 제17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u>도서관자료</u>-----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설의 이용 등) ① <u>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시설 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표 2의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u> ②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u> <u>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u> <u>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u> <u>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u> <u>4.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u> <u>5.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u> <u>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 <u>7.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③ <u>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 줄 수 없다.</u> ④ <u>시설의 이용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17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	--

및 제적) ① 시장은 <u>도서관 자료를 이용자</u>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장은 <u>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u>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0조(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 ① (생략) ② <u>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u> <신설> <신설>	및 제적) ① ----<u>도서관자료</u>----- ----- ----- -----. ② -----<u>도서관자료</u>----- ----- -----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u>별표 2의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고, 재료비와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u>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u>시장은 시설 이용자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u> 1. 전액면제 가.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이용</u> 나.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2. 100분의 5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신 설>

제22조(이용료) 도서관의 시설이용과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고양시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④ (생 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의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생 략)

2.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3(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와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삭 제>

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

-- 고양시 도서관운영위원회-----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 <단서 삭제>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자료-----
--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5. (생략) <u>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3. 독서 문화 진흥----- 4.~5. (현행과 같음) <u><삭제></u>
--	--

현행	개정안																													
<u><신설></u>	[별표 2]																													
	<u>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u> (제16조 및 제20조 관련)																													
	1. 시설 및 장비 이용료																													
	<table><tr><th colspan="2">구분</th><th>면적</th><th>기준시간</th><th>이용 요금</th></tr><tr><td rowspan="4">시설</td><td rowspan="2">강의실</td><td>70㎡이하</td><td rowspan="2">1회 (2시간)</td><td>20,000원</td></tr><tr><td>71㎡이상</td><td>30,000원</td></tr><tr><td colspan="2">시청각실</td><td>1회 (2시간)</td><td>50,000원</td></tr><tr><td colspan="2">미디어창작실</td><td>1회 (3시간)</td><td>15,000원</td></tr><tr><td rowspan="2">장비</td><td colspan="2">미디어창작실 장비</td><td>1회 (3시간)</td><td>5,000원 ~ 10,000원</td></tr><tr><td colspan="2">메이커스페이스 전문장비</td><td>시간당</td><td>1,000원 ~ 5,000원</td></tr></table>	구분		면적	기준시간	이용 요금	시설	강의실	70㎡이하	1회 (2시간)	20,000원	71㎡이상	30,000원	시청각실		1회 (2시간)	50,000원	미디어창작실		1회 (3시간)	15,000원	장비	미디어창작실 장비		1회 (3시간)	5,000원 ~ 10,000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장비		시간당	1,000원 ~ 5,000원
	구분		면적	기준시간	이용 요금																									
시설	강의실	70㎡이하	1회 (2시간)	20,000원																										
		71㎡이상		30,000원																										
	시청각실		1회 (2시간)	50,000원																										
	미디어창작실		1회 (3시간)	15,000원																										
장비	미디어창작실 장비		1회 (3시간)	5,000원 ~ 10,000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장비		시간당	1,000원 ~ 5,000원																										
비고																														
1. 이용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시간당 이용료를 초과시간에 따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 산정은 준비시간을 포함한다.																														
3. 이용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2. 수강료																													
	<table><tr><th>구분</th><th>기준</th><th>수강료</th><th>비고</th></tr><tr><td>도서관 강좌</td><td>1강좌 (4회 기준)</td><td>월 50,000원 이하</td><td>교재비·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td></tr></table>	구분	기준	수강료	비고	도서관 강좌	1강좌 (4회 기준)	월 50,000원 이하	교재비·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																					
구분	기준	수강료	비고																											
도서관 강좌	1강좌 (4회 기준)	월 50,000원 이하	교재비·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																											

<신 설>

[별표 3]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20조의3 관련)

구 분		반환기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도서관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개시일 이전·이후 : 전액반환	
	수강료		
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개시일 7일 전까지	전액반환
		개시일 당일까지	90퍼센트 반환
	수강료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반환
		개시일 이후	수강 회차 단위로 경과한 회차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총 수강 회차의 1/2 경과 이후 미반환
비고			
1.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를 제출한 날로 함			
2. 수강료 반환금액의 산정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 경과한 수업 회차를 기준으로 함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도서관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맞춰 시설·장비 이용허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도서관 이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감경 및 반환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서관 이용시간을 조정함(안 제2조).
- 나. 도서관 시설의 이용허가에 따른 용어와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10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 다. 도서관 이용료와 수강료 감경 및 반환 관련 서식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 라.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비함(안 제15조).

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재동의(2년)사항을 반영함(별지 제2호서식).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31-8075-9012)

- 팩 스 : 031-8075-489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열람실”을 “열람실: 08:00 ~ 22:00”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1. 자료실 및 어린이도서관 등

구분	평일 (월~금)	주말 (토~일)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	09:00~21:00	09:00~18:00
어린이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	09:00~18:00	
어린이도서관	09:00~18:00	
별꿈도서관	10:00~19:00	09:00~18:00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원에게 가입하고자”를 “회원으로 가입하려고”로, “구비하여”를 “갖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만 14세”를 “14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같은 항 단서

중 “시장이 특별히” 를 “시장이”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원이 1회에 관외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지닌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개인·가족회원: 회원 1인당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관당 7권 이내(이 경우 고양시 관내 도서관의 총 수량은 25권 이내로 한다)

2. 단체회원: 500권 이내

⑤ 자료의 대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가족회원: 대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다만,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2. 단체회원: 대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이 경우 연장은 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동일 도서를 관외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납 후 1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독서진흥” 을 “독서 진흥” 으로, “일시” 를 “일시적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이 동한” 을 “이동한”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반출하려” 를 “반출하려고”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 을 “않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경과된” 을 “지난”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람” 을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판단한 사람” 을 “판단하는 경우”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를 “(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허가를 받고자” 를 “이용허가를 받으려고” 로,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를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로, “시설 사용허가” 를 “시설·장비 이용허가” 로, “제출하여야” 를 “제출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기간” 을 “이용기간” 으로, “사용할” 을 “이용할”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신청” 을 “이용신청” 으로, “시설 사용대장” 을 “시설·장비 이용대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신청” 을 “이용신청” 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를 “(시설이용허가의 취소)”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허가” 를 “이용허가” 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용자에게” 를 각각 “시설 이용자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권한” 을 “이용권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 을 “이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위” 를 “거짓” 으로, “사용승낙” 을 “이용승낙”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목적” 을 “이용목적” 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이용료 등 감경 및 반환)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경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감경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중 “파손·오손” 을 “파손, 망가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과된” 을 “지난”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 를 “자료의 폐기” 로, “연간” 을 “연간 해당” 으로 하고, “7 이내로 한다” 를 “7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 를 “심의하거

나 자문에 응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 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도서관 자료” 를 “도서관자료”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 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도서관 자료” 를 “도서관자료” 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언어야 한다” 를 “받아야 하며” 로, “변경하고자” 를 “변경하려고” 로, 같은 조 제2항 중 “언고자” 를 “받으려고” 로, “제출하여야” 를 “제출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 를 “제출해야”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덕양구도서관과 최 경 숙
	팀 장 성 명	도서관정책팀장 이 준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진 근 숙 031-8075-9012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재발급) 신청서(개인, 가족)

필수항목	회원종류(√표시) :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					
	본인	성명	(남·여)		휴대전화	
		생년월일			일반전화	
	주소		※ 경기도 내 재직자, 재학생일 경우 소속기관 주소를 적을 것			
	전자우편(E-mail)					
	아이디(ID)					
	※ 영문, 숫자 조합 6~20자 (첫자는 영문만 가능) ※ 위의 아이디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 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항목	가족회원 등록시	성명	관계	생년월일	대출번호	동의(서명)
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때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본인 여부 및 경기도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2.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구성원 도서대출증					

(뒷면)

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종류 :√표시)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

고양시 도서관센터 회원가입과 도서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도서관 회원가입 개인정보 수집·이용

구분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주소, 전자우편, 사용자ID, 비밀번호	도서관센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회원 탈퇴 시까지 (2년 단위 재동의)
선택	(가족)성명, 관계, 생년월일, 대출번호	가족회원 등록 및 서비스 이용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서관센터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의 3자 제공 내역 (‘책이음’ 회원 가입 시 필수)

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합도서관서비스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참여도서관 중 이용하지 않은 도서관을 최초 이용하는 시점에 제공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주소, 전자우편	책이음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회원 탈퇴 시까지 (2년 단위 재동의)

※ 참여도서관 및 개인정보 제공 현황은 통합도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books.nl.go.kr>)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책이음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SMS서비스 수신 동의 (선택)

본인은 공지사항, 반납예정일 안내, 희망도서·예약도서·상호대차도서 도착, 문화행사 등에 관한 SMS 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 SMS서비스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 인 :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접수번호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이 용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시설·장비)			이용인원	명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요일 (: ~ :)			
이 용 목 적				
이 용 료			감면사유	
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이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접수번호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서			
이 용 자	성 명		전화번호	
이용(시설·장비)			이용인원	명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요일 (: ~ :)			
이 용 료				
위와 같이 시설 및 장비 이용을 허가(변경)합니다. 년 월 일				

허 가 조 건

1. 본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권한을 다른 단체(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사전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는 원상회복이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시설 내에 음식 반입 및 섭취를 금지하며, 도서관 내 흡연을 금지합니다.
5. 이용한 후 이용시설의 잠금장치와 시설물 배치상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6. 행사가 끝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7. 상기의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도서관의 행사와의 중복, 불가항력적 사항 발생 또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승낙을 받은 경우 등 소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사를 불허하거나 허가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허가 취소가 된 자는 즉시 행사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등 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허가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 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장비 이용에 대한 신청자격 확인, 허가 여부 통보,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장비이용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대장

번호	접수 일자	이 용 자		이용시설 (이용장비)	이용기간 (시간)	참석예정 인원	비고	결 재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팀장	과장

(뒷면)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에 대한 신청자격 확인,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이용료(수강료) 감경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뒷면)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에 대한 납부한 이용료(수강료) 내역 확인,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이용시간) ① (생략) 1. 자료실 및 어린이도서관 등 <table><tr><th>구분</th><th>평일 (월~금)</th><th>주말 (토~일)</th></tr><tr><td>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청소년자료실</td><td>09:00~22:00</td><td>09:00~18:00</td></tr><tr><td>어린이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td><td colspan="2">09:00~18:00</td></tr><tr><td>어린이도서관</td><td colspan="2">09:00~18:00</td></tr><tr><td>별곡도서관</td><td>10:00~19:00</td><td>09:00~18:00</td></tr></table> 2. 열람실 가. 하절기(3월~10월) : 07:00 ~ 23:00 나. 동절기(11월~2월) : 08:00 ~ 23:00 ② (생략)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략) 5. <u>도서관 자료</u>, 비품 등의 훼손 행위 6.~8. (생략) ② (생략) 제5조(회원가입)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구분	평일 (월~금)	주말 (토~일)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청소년자료실	09:00~22:00	09:00~18:00	어린이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	09:00~18:00		어린이도서관	09:00~18:00		별곡도서관	10:00~19:00	09:00~18:00	제2조(이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1. 자료실 및 어린이도서관 등 <table><tr><th>구분</th><th>평일 (월~금)</th><th>주말 (토~일)</th></tr><tr><td>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td><td>09:00~21:00</td><td>09:00~18:00</td></tr><tr><td>어린이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td><td colspan="2">09:00~18:00</td></tr><tr><td>어린이도서관</td><td colspan="2">09:00~18:00</td></tr><tr><td>별곡도서관</td><td>10:00~19:00</td><td>09:00~18:00</td></tr></table> 2. 열람실: 08:00~22:00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 ----- ----- ----- -----해서는 안 된다. 1.~4. (현행과 같음) 5. <u>도서관자료</u>----- 6.~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원가입) ① -----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 ----- -----갖춰 ----- -----14세----- -----.	구분	평일 (월~금)	주말 (토~일)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	09:00~21:00	09:00~18:00	어린이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	09:00~18:00		어린이도서관	09:00~18:00		별곡도서관	10:00~19:00	09:00~18:00
구분	평일 (월~금)	주말 (토~일)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청소년자료실	09:00~22:00	09:00~18:00																													
어린이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	09:00~18:00																														
어린이도서관	09:00~18:00																														
별곡도서관	10:00~19:00	09:00~18:00																													
구분	평일 (월~금)	주말 (토~일)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	09:00~21:00	09:00~18:00																													
어린이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	09:00~18:00																														
어린이도서관	09:00~18:00																														
별곡도서관	10:00~19:00	09:00~18:00																													

1. 경기도민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4. (생략)

②~④ (생략)

제6조(관외대출) ① 시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도서관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원이 1회에 관외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연구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개인·가족회원 : 회원 1인당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관당 7권 이내, 타관 포함 25권 이내로 한다.

2. 단체회원 : 500권 이내

③~④ (생략)

⑤ 자료의 대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가족회원 : 대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2. 단체회원 : 대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로 하고, 연장은 불가하다.

⑥ 동일인의 동일도서 재대출은 반납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관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진

1. -----주민등록표등본-----

2.~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6조(관외대출) ① -----
-----도서관자료-----
-----시장이-----
-----.

② 회원이 1회에 관외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연구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지닌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개인·가족회원: 회원 1인당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관당 7권 이내(이 경우 고양시 관내 도서관의 총 수량은 25권 이내로 한다)

2. 단체회원: 500권 이내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자료의 대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가족회원: 대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다만,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2. 단체회원: 대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이 경우 연장은 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동일 도서를 관외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납 후 1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독서 진흥

<u>홍</u>의 목적으로 대출정지를 <u>일시</u> 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1.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를 <u>이동한</u> 사람 2. (생 략)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u>반출하려</u> 한 사람 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u>아니한</u> 사람 5. 대출 자료 반납 기한이 2년 이상 <u>경과된</u> 사람(다만, 회원자격상실 해제를 원하는 경우 조례 제23조에 따라 반납하지 않은 자료를 변상하여야 한다) 6. 본인 또는 보호자가 탈퇴를 원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u>판단한</u> 사람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생 략) ② 시설의 <u>사용허가</u>를 받고자 하는 자는 <u>사용예정일 7일 전에</u> 별지 제4호서식의 <u>시설 사용허가</u> 신청서를 도서관에 <u>제출하여야</u> 한다. ③ <u>사용기간</u>은 1개월 이내로 하되,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u>사용</u>할 수 있다. ④ 신청자격은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시에 있는 5명 이상의 단체로 한다. ⑤ 시장은 시설의 <u>사용신청</u> 및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u>시설</u>	-----<u>일시적으로</u>----- -----. ④ (현행과 같음) 1. ----- -----<u>이동한</u>----- 2. (현행과 같음) 3. ----- -----<u>반출하려고</u>----- 4. ----- -----<u>않은</u>----- 5. ----- <u>지난</u>----- ----- ----- 6. ----- <u>경우</u> 7. ----- -----<u>판단하는 경우</u> 제10조(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이용허가</u>를 받으려고----- <u>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u> -----<u>시설·장비 이용허가</u> -----<u>제출해야</u>-----. ③ <u>이용기간</u>----- -----<u>이용</u>-----. <삭 제> ⑤ ----- <u>이용신청</u>----- -----
--	---

<u>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 ⑥ 제1항의 <u>사용신청</u> 및 허가는 전산 시스템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u>사용허가</u>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u>사용자에게</u>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u>사용자에게</u> 있다. 1. <u>사용권한</u>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u>사용</u>이 불가능한 경우 3. <u>허위</u>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u>사용승낙</u>을 받은 경우 4. <u>사용목적</u>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생략) <신설> 제15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 ①~③ (생략) 1. (생략) 2. 자료의 훼손 또는 <u>파손·오손</u> 3.~4. (생략) 5. 반납예정일이 2년 이상 <u>경과된</u> 미회수 자료	<u>시설·장비 이용대장</u>-----. ⑥ -----<u>이용신청</u>----- 제11조(시설이용허가의 취소) ----- ----- ----- <u>이용허가</u>----- ----- <u>시설 이용자</u>에게----- ----- <u>시설 이용자</u>에게-----. 1. <u>이용권한</u>----- 2. ----- 3. <u>거짓</u>-----<u>이용승낙</u>----- 4. <u>이용목적</u>----- 5.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이용료 등 감경 및 반환) ① <u>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경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감경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u> ② <u>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u> 제15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 ①~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파손, 망가짐</u> 3.~4. (현행과 같음) 5. -----<u>지난</u>-----
--	---

<신 설>

④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실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각종 재난 및 재해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고 등

<신 설>

제2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생 략)

② (생 략)

1. 도서관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가.~다. (생 략)

2. 자료심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가. 도서관 자료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라. (생 략)

3. 도서관운영활성화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가. 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나.~다. (생 략)

제28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료의 폐기-----
연간 해당-----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삭 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가.~다. (현행과 같음)

2. -----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가. 도서관자료-----

나.~라. (현행과 같음)

3. -----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가. 도서관자료-----

나.~다. (현행과 같음)

제28조(예산 및 결산) ① -----

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u>얻어야 한다</u>. 이를 <u>변경하고자</u>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u>얻고자</u>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편성된 예산안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④ (생 략)	----- -----<u>받아야 하며</u>,-----<u>변경</u> <u>하려고</u>-----. ② -----<u>받으려</u> <u>고</u>----- ----- -----<u>제출해야</u>-----. ③ ----- ----- ----- -----<u>제출해야</u>-----.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재발급) 신청서(개인, 가족)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재발급) 신청서(개인, 가족)							
필수항목	회원종류(√ 표시) :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						필수항목	회원종류(√ 표시) :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						
	본인	성명			휴대전화			본인	성명	(남·여)	휴대전화			
		생년월일			일반전화				생년월일			일반전화		
	주소		※ 경기도 내 재직자, 재학생일 경우 소속기관 주소 기재 요망					주소		※ 경기도 내 재직자, 재학생일 경우 소속기관 주소를 적을 것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E-mail)						
	아이디(ID)							아이디(ID)						
※ 영문, 숫자 조합 6~20자 (첫자는 영문만 가능) ※ 위의 아이디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가능함.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 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영문, 숫자 조합 6~20자 (첫자는 영문만 가능) ※ 위의 아이디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가능함.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 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항목	가족회원등록시 기재요망	성명	관계	생년월일	대출번호	동의(서명)	선택항목	가족회원등록시	성명	관계	생년월일	대출번호	동의(서명)	
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 (서명 또는 날인)							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때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본인 여부 및 경기도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2.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구성원 도서대출증					첨부서류		1. 본인 여부 및 경기도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2.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구성원 도서대출증					

[별지 제2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회원종류 :√표시)

☐ 관내회원

☐ 책임음회원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필수)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도서대출증 발급(재발급) 신청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며 도서관 서비스 이용시 본인식별 및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주소, 전자우편, 사용자ID, 비밀번호
나. 사용 중 생성 항목 : 대출자번호, 성별, 관리구분, 소속코드, 직급코드, 본인인증코드, 회원구분, 가입자료실, 우편발송지역,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제적일자, 대출정지일, 대출정지회원사유, 회원증분실여부, 회원증발급횟수, 현재대출권수, 현재연체권수, 누적연체횟수, 누적연체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탈퇴 의사 후 즉시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 및 도서관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개인정보의 3자 제공(책임음회원의 경우 필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가. 통합도서가입 시 가입도서관에 개인정보 수집 후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참여도서관 중 이용하지 않은 도서관을 최초 이용하는 시점에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나. 참여도서관 및 개인정보 제공 현황은 통합도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book.nl.go.kr>)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주소, 전자우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탈퇴 의사 후 즉시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통합도서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제3자제공)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SMS서비스 수신 동의(선택)

본인은 공지사항, 반납예정일 안내, 희망도서 · 예약도서 · 상호대차도서 도착, 문화행사 등에 관한 SMS 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신청인 : (서명)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종류 :√표시)

☐ 관내회원

☐ 책임음회원

고양시 도서관센터 회원가입과 도서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도서관 회원가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구분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주소, 전자우편, 사용자ID, 비밀번호	도서관센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회원 탈퇴 시까지 (2년 단위 재동의)
선택	(가족)성명, 관계, 생년월일, 대출번호	가족회원 등록 및 서비스 이용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서관센터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의 3자 제공 내역 (‘책임음’ 회원 가입 시 필수)

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제 서비스 이용,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기간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참여도서관 중 이용하지 않은 도서관을 최초 이용하는 시점에 제공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일반전화), 주소, 전자우편	책임음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회원 탈퇴 시까지 (2년 단위 재동의)

※ 참여도서관 및 개인정보 제공 현황은 통합도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ooks.nl.go.kr>)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책임음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SMS서비스 수신 동의 (선택)

본인은 공지사항, 반납예정일 안내, 희망도서 · 예약도서 · 상호대차도서 도착, 문화행사 등에 관한 SMS 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 SMS서비스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본 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	단 체 명		단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 미등록 단체일 경우 대표자의 주소 기재 요망		
	연 락 처	일반 전화		휴대전화
행 사 개 요	행사(강좌) 명			
	사용목적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요일 (: ~ :)			
사 용 시 설			사용인원	명
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등록 단체일 경우 등록증 사본, 등록 단체가 아닐 경우 대표자가 고양시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담당자기입	심사결과 ☐ 승인 ☐ 미승인 ☐ 보류 심사일 : 년 월 일 담당자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이 용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시설·장비)			이용인원	명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요일 (: ~ :)			
이 용 목 적				
이 용 료			감면사유	
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이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접수번호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서			
이 용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이용인원
이용(시설·장비)			이용인원	명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요일 (: ~ :)			
이 용 료				
위와 같이 시설 및 장비 이용을 허가(변경)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영리,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자격은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고양시에 있는 5명 이상의 단체로 합니다.
3. 사용권한을 다른 단체(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는 사전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원상회복이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5. 시설 내에 음식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며, 도서관 내 흡연을 금지합니다.
6. 사용한 후 사용시설의 잠금장치와 시설물 배치상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7. 행사가 끝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8. 상기의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도서관의 행사와의 중복, 불가항력적 사항 발생 또는 공공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승낙을 받은 경우 등 소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사를 불허하거나 허가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9 허가 취소가 된 단체는 즉시 행사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등 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시설 사용에 대한 신청자격 확인, 허가 여부 통보,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주소
나. 선택항목 : 일반전화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로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사용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별지 제4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권한을 다른 단체(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사전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는 원상회복이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시설 내에 음식 반입 및 섭취를 금지하며, 도서관 내 흡연을 금지합니다.
5. 이용한 후 이용시설의잠금장치와 시설물 배치상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6. 행사가 끝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7. 상기의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도서관의 행사와의 중복, 불가항력적 사항 발생 또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승낙을 받은 경우 등 소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사를 불허하거나 허가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허가 취소가 된 자는 즉시 행사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등 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허가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 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시설·장비 이용에 대한 신청자격 확인, 허가 여부 통보,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장비이용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대장

번호	접수 일자	사 용 자		행사명 및 사용목적	사용기간 (시간)	참석예 정인원	전화 번호	결 재		
		단체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시설 · 장비 이용대장

번호	접수 일자	이 용 자		이용시설 (이용장비)	이용기간 (시간)	참석예 정인원	비고	결 재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팀장	과장

<신 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이용료(수강료) 감경신청서				
이 용 자	시 설 명 (강 좌 명)		이용기간 (강좌기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 용 료 (수 강 료)	금 원정 (₩)			
감경사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 용료(수강료)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 구비서류: 대상자의 해당증명서(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 밖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에 대한 신청자격 확인,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이 용료(수강료) 감경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신 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				
이용자	시 설 명 (강 좌 명)		이용기간 (강좌기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용료 (수강료)	금 원정(₩)			
반환금액	금 원정(₩)			
반환신청 사 유				
반환구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도서관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① 개시일 이전·이후 : 전액반환	
		수강료	② 개시일 이전·이후 : 전액반환	
	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시설·장비 이용료	③ 개시일 7일 전까지	전액반환
			④ 개시일 당일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수강료	⑤ 개시일 전 일까지	전액반환
			⑥ 개시일 이후	수강 회차 단위로 경과한 회차를 공제한 나머 지 금액 총 수강 회차의 1/2 경과 이후 미반환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이 용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신 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에 대한 납부한 이용료(수강료) 내역 확인,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 신청일(심사일)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방식 중 정액제로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031-8075-2698)

- 팩 스 : 031-8075-492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다른 조례의 준용)” 을 “(준용)” 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부서장(직위) 성 명	자원순환과장 안 명 렬
	팀 장(직위) 성 명	음식물자원화팀장 주 은 주
	담당자 성명·전화	김 재 영 (031-8075-269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다른 조례의 준용) (생략)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9조제1항, 제14조제4항 관련) 3.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table border="1"> <tr> <td>적용대상</td><td>수수료(원/월)</td></tr> <tr> <td>공동주택 (세대기준)</td><td>1,900원</td></tr> </table>	적용대상	수수료(원/월)	공동주택 (세대기준)	1,900원	제20조(준용) (현행과 같음)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9조제1항, 제14조제4항 관련) <삭제>
적용대상	수수료(원/월)				
공동주택 (세대기준)	1,900원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2023년 6월 22일부터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CCTV 설치 법정 의무 시설을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CCTV 설치 법정 의무 시설을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노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031-8075-3268)

- 팩 스 : 031-8075-491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사망하였을”을 “사망했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비밀을 요하거나”를 “비밀인 경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부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을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업무담당 팀장”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로 한다.

제12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별표 2-2쪽 사목 가점부여항목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가점부여항목	1.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유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단기보호, 주야간보호)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하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은 가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	
--------------	---	---	--

※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2.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4.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신청 및 신고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노인복지과장 성 윤 현
	팀 장 성 명	노인요양팀장 김 정 아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승 원 031-8075-326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u>운영하여야</u> 한다.	제2조(설치) ----- ----- ----- ----- ----- ----- ----- <u>운영해야</u> --.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u>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u>아니하여야</u> 한다. 1.~4. (생략) ④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호선(互選)</u> ----. ③ ----- ----- ----- ----- <u>않아야</u> --. 1.~4. (생략) ④ (생략)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사 및 의결에서 <u>회피</u>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회피</u> 해야-----.
제5조(위원의 해촉) (생략) 1. 위원이 임기 중 <u>사망하였을</u> 경우 2. ~4. (생략) 5.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u>아니한</u> 경우	제5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1. ----- <u>사망했을</u> ----- 2. ~4. (현행과 같음) 5. ----- ----- <u>않은</u> ----

6. (생 략) 제7조(회의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u>비밀을 요하거나</u>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u>개의</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 략) 제8조(심사 및 의결)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출석한 각 위원 of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u>부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u>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u>통보</u>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u>업무담당 팀장</u>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u>규정</u>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비밀인</u> <u>경우 또는</u>----- -----. ④ ----- -----<u>개 의(開議)</u>----- -----. ⑤ (생 략) 제8조(심사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부결(이</u> <u>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u> ③ ----- ----- ---<u>통보</u>해야-----. 제10조(간사) ----- ----- -----<u>업무 담당 공무원</u>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1조(수당 등) ----- -----<u>「고양시</u> <u>각</u> <u>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u> <u>례」</u>에----- -----. 제12조(운영세칙) --<u>규칙</u>----- ----- ----- -----.
--	--

현행	개정안																																
[별표] <u>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u>(제8조 관련)	[별표] <u>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u>(제8조 관련)																																
<table><tr><td colspan="4">(생략)</td></tr><tr><td>사.가점부 여항목</td><td>1. CCTV 설치 유무(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단기보호, 주야간보호)노인복지시설에 한함)</td><td>3</td><td></td></tr><tr><td colspan="4">(생략)</td></tr><tr><td colspan="4">※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u>80점 이상</u>이어야 함</td></tr></table>	(생략)				사.가점부 여항목	1. CCTV 설치 유무(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단기보호, 주야간보호)노인복지시설에 한함)	3		(생략)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u>80점 이상</u> 이어야 함				<table><tr><td colspan="4">(현행과 같음)</td></tr><tr><td>사.가점부 여항목</td><td>1.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유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단기보호, 주야간보호)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하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은 가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td><td>3</td><td></td></tr><tr><td colspan="4">(현행과 같음)</td></tr><tr><td colspan="4">※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u>80점 이상</u>이어야 함</td></tr></table>	(현행과 같음)				사.가점부 여항목	1.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유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단기보호, 주야간보호)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하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은 가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u>80점 이상</u> 이어야 함			
(생략)																																	
사.가점부 여항목	1. CCTV 설치 유무(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단기보호, 주야간보호)노인복지시설에 한함)	3																															
(생략)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u>80점 이상</u> 이어야 함																																	
(현행과 같음)																																	
사.가점부 여항목	1.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유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단기보호, 주야간보호)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하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은 가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점수 평균이 <u>80점 이상</u> 이어야 함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반환 절차·방법, 허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로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 도로정책과 (주교동)

- 전 화 : 도로정책과 도로재산관리팀(031-8075-2852)

- 팩 스 : 031-8075-492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양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인정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허가 수수료)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도로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도로정책과장 서 윤 하
	팀장 성명	도로재산관리팀장 전 경 호
	담당자 성명·전화	김 영 우 031-8075-2852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4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주택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20,700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령 확인 후 점용료를 산정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광고탑, 광고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해야 한다.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u>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양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도로점용허가)</u>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1. 광고탑 및 광고판</u> <u>2. 의류수거함</u> <u>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u> <u>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u>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u>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u>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양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u>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u>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u>2.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u>3.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u>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인정한 것</u> <u>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u>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u>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따른다.</u> <u>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u>	<u>제4조(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u> <u>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u> <u>제5조(허가 수수료)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u>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1층, 고양시청 제3별관

- 전 화 : 주민자치과 자치분권팀(031-8075-2437)

- 팩 스 : 031-8075-496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주민자치과
입안자	과장 성명	주민자치과장 신 건 국
	팀장 성명	자치분권팀장 김 대 성
	담당자 성명·전화	임 재 민 031-8075-2437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 규칙의 인건비 지원 사업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교육지원 사업 중 교직원 인건비 항목을 삭제함 (안 제2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평생교육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1층 평생교육과
- 전 화 :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031-8075-2273)
- 팩 스 : 031-8075-492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함에 있어”를 “지원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그 간”을 “그 간”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함에 있어”를 “지원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경비의 집행에 있어”를 “교육경비를 집행하는 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7월 말”를 “7월 31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들에게”를 “위원에게”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을 “미리 통지하지 않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유한”을 “거친”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산)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정산 서류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2. 보조사업 세부추진실적: 별지 제5호서식

3.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별지 제6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평생교육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김 보 경
	팀 성 장 명	교육협력팀장 이 승 연
	담 당 자 성명·전화	여 인 찬 031-8075-227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생략) (생략) - 각급 학교의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사업 ~8. (생략)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8.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생략) - 교육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 그간의 지원 예산이 적은 학교의 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우선순위) ----- -----지원할 때----- -----. ~2. (현행과 같음) -----따른----- - 그 간-----
제4조(보조사업의 제한) 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생략) - 교육경비의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생략)	제4조(보조사업의 제한) ----- -----지원할 때----- -----. (현행과 같음) - 교육경비의 집행하는 데에----- ----- -----않고-----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기한 및 자료통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각급 학교장이 다음연도의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청과 사업명,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라 7월 말까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기한 및 자료통지) ① ----- -----다음 연도----- ----- ----- -----7월 31일----- -----제출해야-----.

다만, 신청기한 이후에 제출된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보조사업 대상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회의개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u>그러</u>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청을 <u>경유한</u> 신청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사전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u>제6조(정산)</u>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u>대해서는</u>----- -----. ② ----- -----<u>위원에게</u> -----<u>통지해야</u>----- -----<u>미리</u> 통지하지 않을-----. ③ -----<u>거친</u>----- ----- --- <u>제6조(정산)</u>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정산 서류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2. 보조사업 세부추진실적: 별지 제5호서식 3.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별지 제6호서식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기관별 기준정수 등 행정현실을 반영한 규칙 개정으로 공용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예산안 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의 차량정수를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신규차량의 교체 및 임시차량 정수 배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및 제9조의2).

다. 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라. 공용차량 기준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별표2).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재산관리과)

- 전 화 : 재산관리과 차량관리팀(031-8075-2548)

- 팩 스 : 031-8075-495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받고자 하는” 을 “받으려는”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를 다음 연도 본예산안 편성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확정된 이후에도 차량정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기한을” 을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차량정수의 범위에서 기한을” 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아니할” 을 “않은” 으로 한다.

제14조 중 “아니하고는” 을 “않고는” 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 중 “아니되며” 를 “안 되며” 로,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 을 “않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차량 10대 이하를” 을 “차량을 10대 이하로” 로, “아니할” 을 “않을” 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 ① 다인승 승합차량(중형·대형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 지원을 받으려는 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행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미리 충분히 검토한 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인승 승합차량 운행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인승 승합차량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배차를 승인해야 한다.

1. 국가, 경기도, 시 또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공성 행사에 따른 인원 및 물자 수송
2.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교육 및 행사
3. 긴급한 재해복구지원·구호·자선적 행사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하는 행사
4.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또는 후생복지 부서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전국· 시도 대회 및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2항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25조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28조제1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0조제6호 중 “피해자·가해자·사상자”를 “피해자·가해자·사상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 구입 중이거나 교체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배정 또는 교체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재산관리과
입안자	과장 성명	재산관리과장 김 학 배
	팀장 성명	차량관리팀장 박 동 각
	담당자 성명·전화	허 승 부 031-8075-2548

[별표 2]

공용차량의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임시차량을 포함한다)

가. 전용, 의전용 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규모 또는 유형별	
		대형·중형·소형·경형· 다목적승용차	비 고
시 본청	6대	6대 • 시장 전용 1대 • 부시장 전용 2대 • 의전용 3대	본청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3급 이상 공무원일 경우에는 전용차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구청	3대	• 구청장 전용 1대	
사업소	-	-	
시의회	2대	2대 • 의장 전용 1대 • 의전용 1대	

나. 업무용 차량 기준정수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대수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승용차	1부서(과, 담당관) 및 동(행정복지센터)별 1대 배정 원칙
	1부서(과, 담당관) 및 동(행정복지센터)별 5개 팀 초과 시 1대 추가 배정
	1팀 인원이 5명 초과 시 차량총괄부서와 협의하여 5명당 1대 추가 배정

2. 승합, 화물차량 기준정수(임시차량을 포함한다)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대수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승합차·화물차	동(행정복지센터)별 1대 배정 원칙
	실·국·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중 현장업무 위주의 부서는 차량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배정

3. 특수차량 기준정수(임시차량을 포함한다)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대수
청소차, 살수차, 구급차, 크레인트럭 등 특수용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기준정수로 책정하고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량 증감 등을 고려하여 배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9. (생략) 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의회사무국을 말한다. 11.~12. (생략) 제5조(정수배정)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7조(차량의 교체)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u>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1.~3. (생략) 제9조의2(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단위행정기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 -----받으 려는----- ----- --. 11.~12. (현행과 같음) 제5조(정수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를 다음 연도 본예산안 편성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확정된 이후에도 차량정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차량의 교체) ① -----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 ----- ----- ----- -----. 1.~3.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 -----

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
력,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
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
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생 략)

1. (생 략)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
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
입하지 아니할 경우
3. (생 략)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
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8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③ (생
략)**

④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
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
서는 아니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위치 및 방법에 따라 슬로건
(시 심벌마크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
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차량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에는 공개경쟁 방법을 통하여 한 번에
청약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10대 이
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⑩ (생 략)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차량
정수의 범위에서 기한을-----
-----.

② (생 략)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현행과 같
음)**

1. (현행과 같음)
2. -----

-----않은-----
3. (현행과 같음)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

-----않고는-----
-----.

**제18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③ (현
행과 같음)**

④ -----

-----안 되며-----

-----않을-----.

⑤ -----

-----차량을 10대
이하로-----
-----않을-----.

⑥~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유류사용의 정산) ① (생략)

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직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지도·점검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

제20조의2(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

① 다인승 승합차량(중형·대형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 지원을 받으려는 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행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미리 충분히 검토한 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인승 승합차량 운행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인승 승합차량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배차를 승인해야 한다.

1. 국가, 경기도, 시 또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공성 행사에 따른 인원 및 물자 수송
2.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교육 및 행사
3. 긴급한 재해복구지원·구호·자선적 행사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하는 행사
4.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또는 후생복지 부서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전국· 시도 대회 및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유류사용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날-----

-----.

제25조(지도·점검 등) -----
-----연 1회-----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3. (생략) 제28조(금지사항) (생략) 1.~10. (생략) 11. 배차되지 <u>아니한</u>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13. (생략) 제30조(사고보고) (생략) 1.~5. (생략) 6. <u>피해자·가해자·사상자</u>의 인적 사항 7. (생략)	----- -----. 1.~3. (현행과 같음) 제28조(금지사항)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u>않은</u>----- ----- 12.~13. (현행과 같음) 제30조(사고보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u>피해자·가해자·사상자</u>----- --- 7. (현행과 같음)
---	--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 및 대수
가. 통근용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기관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차량과 대수를 배정
나. 교육훈련용	교육인원·교육횟수·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다. 긴급재난용	각종 재난·재해 현장 활동 등 대단위 인력동원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라. 그밖의사업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량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정대상 및 대수
가.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량과 대수를 배정
나. 산림 및 보건 환경 사업용	산림의 보호, 육성 및 보건환경 운영관리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로 적절한 대수 배정
다. 지방세지도용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라. 각종 단속용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로 적절한 대수 배정
마. 긴급재난용	각종 재난·재해 현장 활동 등 물자수송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바. 그밖의사업용	사업용으로 현장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량과 대수를 배정

2. 승합, 화물차량 기준정수(임시차량을 포함한다)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대수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승합차·화물차	동(행정복지센터)별 1대 배정 원칙 실·국·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중 현장업무 위주의 부서는 차량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배정

3. 특수차량 기준정수(임시차량을 포함한다)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대수
청소차, 살수차, 구급차, 크레인트럭 등 특수용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기준정수로 책정하고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량 증감 등을 고려하여 배정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정대상 및 대수
가. 긴급재난용	화재나 재해 등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방용 등의 장비를 갖춘 특수차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적합하도록 적정한 대수를 배정. 다만,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용차량은 승용차량, 승합용차량 중에서 배정할 수도 있다.
나. 그밖의 사업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독서진흥팀(031-8075-9019)

- 팩 스 : 031-8075-489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 중 “독서문화”를 각각 “독서 문화”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덕양구도서관과장 최 경 숙
	팀 장 성 명	독서진흥팀장 조 은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미 선 031-8075-9019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u>독서문화</u>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u>독서문화</u>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독서문화</u>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환경조성, 독서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 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과 시 소재 독서관련 기관·단체, 독서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u>독서문화</u> 진흥의 지원대상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u>독서문화</u>의 체계적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고양시 <u>독서문화</u>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고양시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 <u>독서 문화</u>----- -----. 제2조(적용 범위) <u>독서 문화</u>----- ----- ----- -----. 제3조(책무 등) ① ----- -----<u>독서 문화</u>----- ----- ----- ----- -----. ② ----- ----- ----- <u>독서 문화</u>----- ----- ----- -----. 제4조(종합계획) ① ----<u>독서 문화</u>----- ----- ----- ----- ----- <u>독서 문화</u>-----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계획 및 지원범위

4.~5. (생략)

③ (생략)

제5조(진흥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효율적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조례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7. (생략)

② (생략)

제6조(독서의 달)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에 기념행사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독서문화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2. 진흥사업의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독서 진흥 관련 모범사례의 수집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② -----
-----독서 문화-----

-----.

1.~2. (현행과 같음)

3. 독서 문화-----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진흥사업 추진 등) ① -----

-----독서 문화-----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독서의 달) ① -----

-----독서 문화-----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당연직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교육·도서관, 출판·서점, 문화계·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독서문화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삭 제>

<삭 제>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자문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그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준용)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및 환수
2. 「고양시 포상 조례」: 제6조제2항의 표창
3.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제척 등, 위원·관계전문가 등의 수당·여비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자전거 등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 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자전거 등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 및 편의 관련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제2항).
- 나. 자전거 등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로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031-8075-2826)

- 팩 스 : 031-8075-492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를 “영 제5조”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관리할”을 “관리하게 할”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전거도로에 있어”를 “자전거도로 중”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 및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로정책과장 서 윤 하
	팀 장 성 명	자전거문화팀장 정 연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영 규 031-8075-282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생 략) ③ (생 략)	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5조----- ----- -----.
제7조(공공자전거 운영) ①~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전거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관리하게 할-----.
제13조(자전거의 주차요금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시장은 사업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3조(자전거의 주차요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50퍼센트-----.
제16조(자전거펌프장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에 있어 이용왕래가 많은 곳에 거리를 지정하여 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자전거펌프장 설치) ① ----- -----자전거도로 중----- ----- -----.
제24조(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①	제24조(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①

(생 략) ② 제1항의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u>혜택 제공방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 제31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u>유관기관 공무원</u> 3.~5. (생 략) ④ (생 략) 제3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생 략) ③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u>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u>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 및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u> 제31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관계 기관</u>----- 3.~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u>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1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청소년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를 현실화하고, 수련시설의 종류와 명칭을 현행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청소년 수련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관련 조항에 따라 중복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조문을 삭제함(안 제9조제5항 및 제9조의2).
- 나. 고양시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의 상한선을 인상함(안 별표 2).
- 다. 고양시청소년시설의 시설명을 현행화함(안 별표 2).
- 라.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규제를 완화함(안 제13조).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 3층(주교동, 원당쑈시티)

- 전 화 : 여성가족과 청소년팀(031-8075-2286)

- 팩 스 : 031-8075-491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회장: 실내 집회장, 야외 집회장, 강의실
2. 체육활동장: 체력단련실, 야외 농구장, 스쿼시장, 인공암벽장
3. 정서함양장: 소극장, 강당
4. 정보자료실: 영상편집실
5. 특별활동실: 취미 교실, 음악 연주실, 프로그램실, 자치활동실, 바리스타실, 제과제빵실, 요리실
6. 상담실: 상담 대기실, 집단 상담실, 개인 상담실, 놀이미술 치료실, 교육실
7. 휴게실: 로비, 야외(1층) 만남의 광장
8. 그 밖의 시설: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지도자실, 위생 시설, 방송실, 샤워장 등

제9조제1항 중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상에 상당하는”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고양

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허가를 아니하거나” 를 “사용허가하지 않거나”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사용료” 을 “사용료 및 강습료” 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에” 를 “ 경우:” 로, “90을 반환한다.” 를 “90 반환” 으로 한다.

제21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여성가족과장 이 경 희
	팀 장 성 명	청소년팀장 이 나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원 수 라 031-8075-2286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제14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사용료	대 상	1회(기본시간) 사용료	비 고
공연장	일반인	150,000	1일 1회 기준
	청소년이하	75,000	1일 1회 기준
강당 체육관	일반인	8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청소년 이하	4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프로그램실	일반인	30,000	기본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청소년 이하	15,000	기본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원
비 고	1. 체 육 관: 체육관을 자유롭게 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 규모, 이용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시설대관: 강당,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에서 강습 및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용료 할증 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나.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5. 부대설비 사용요금은 내부 지침에 따른다. ※ 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며,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강습료(1회 / 1시간 기준)		비 고
		주 3회 이하	주 4회 ~ 6회 이하	
체육시설 이용수업	일반인	70,000	106,000	
	청소년 이하	60,000	96,000	
외국어	일반인	84,000	135,000	
	청소년 이하	75,000	125,000	
예체능	일반인	80,000	130,000	
	청소년 이하	70,000	120,000	
취미·교양 문화 등	일반인	92,000	145,000	
	청소년 이하	82,000	135,000	
상담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검사 필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청소년 사업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		
비 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가. 체육시설 이용: 헬스, 농구, 탁구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나.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다. 예능·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G.X.프로그램, 무도 등의 영역 라. 그 밖의 취미·문화: 외국어, 예능·체능,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마. 상담: 개인·집단 상담 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바. 청소년사업: 동아리 활동, 학교 연계 활동, 진로 체험 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 행사, 특강 등 2. 강습료 감경 ※ 상담사업, 청소년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50퍼센트 감경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30퍼센트 감경 1)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그 밖의 할인은 시설 내부 지침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운영 시 드는 각종 교육재료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며,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u>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1.~4. (생략) 제5조(시설) (생략) 1. <u>집회장 :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강의실</u> 2. <u>체육활동장 : 체력단련실, 야외농구장, 야외인라인스케이트장</u> 3. <u>정서함양장 : 전시장, 음악감상실, 청소년극장</u> 4. <u>정보자료실 : 정보센터, 멀티미디어실, 게임창작실, 인터넷창작실, 인터넷부스 게임시연관, 영상편집실</u> 5. <u>특별활동실 : 컴퓨터연습실, 분임토의실, 취미교실, 예절교실, 음악연주실, 프로그램실, 자치활동실</u> 6. <u>상담실 : 상담대기실,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u> 7. <u>휴게실 : 로비, 야외(1층) 만남의 광장</u> 8. <u>그 밖의 시설 :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지도자실, 위생시설, 방송실 등</u>	제1조(목적) ----- ----- ----- ----- ----- -----<u>운영에</u>----- -----. 제3조(정의) ----- -----<u>다음과</u>-----. 1.~4.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 (현행과 같음) 1. <u>집회장: 실내 집회장, 야외 집회장, 강의실</u> 2. <u>체육활동장: 체력단련실, 야외 농구장, 스쿼시장, 인공암벽장</u> 3. <u>정서함양장: 소극장, 강당</u> 4. <u>정보자료실: 영상편집실</u> 5. <u>특별활동실: 취미 교실, 음악 연주실, 프로그램실, 자치활동실, 바리스타실, 제과제빵실, 요리실</u> 6. <u>상담실: 상담 대기실, 집단 상담실, 개인 상담실, 놀이미술 치료실, 교육실</u> 7. <u>휴게실: 로비, 야외(1층) 만남의 광장</u> 8. <u>그 밖의 시설: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지도자실, 위생 시설, 방송실, 샤워장 등</u>

제9조(위탁계약) ① 제7조제1호에 따라 활동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권 제공,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9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청소년시설 운영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시설 수탁자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위탁계약) ① -----
-----위탁하는
경우에는-----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이
상의-----
-----.

④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조
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제13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활동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자의 인솔 없이 입소하는 청소년

2.~6. (생 략)

제14조(사용료) ① 활동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생 략)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 략)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반환

2. 시설 운영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자가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② (생 략)

제2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 제한) -----
-----사용허가
하지 않거나-----.

<삭 제>

2.~6.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 ① -----사용료
및 강습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
----- 경우:-----

2. -----
----- 경우:-----

3. -----
경우:-----90
반환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권리의 양도금지) -----

-----그렇지
않다.

<삭 제>

현행						개정안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제14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1. 시설사용료			
(단위: 원)						(단위 : 원)			
구 분	대 상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구 분	대 상	1회(기본시간) 사용료	비 고
			1회사용료	월사용료					
헬 스	성 인	1인	3,000	50,000	· 1회 1시간	공연장	일반인	150,000	1일 1회 기준
	청소년	1인	2,000	35,000	· 1회 1시간		청소년이하	75,000	1일 1회 기준
스 퀴 시	성 인	1인	3,000	50,000	· 1회 1시간 / 주3회 강습	강당 체육관	일반인	8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청소년	1인	2,000	35,000	· 1회 1시간 / 주3회 강습		청소년 이하	4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검 도	성 인	1인		40,000	· 주3회 강습	프로그램실	일반인	30,000	기본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청소년	1인		40,000	· 주3회 강습		청소년 이하	15,000	기본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원
에어로빅	성 인	1인		30,000	· 월회원	비 고	1. 체 육 관: 체육관을 자유롭게 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 규모, 이용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시설대관: 강당,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에서 강습 및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용료 할증 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나.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5. 부대설비 사용요금은 내부 지침에 따른다. ※ 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며,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세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		
	청소년	1인		25,000	· 월회원				
스포츠댄스	성 인	1인		30,000	· 주2회 강습				
	청소년	1인		20,000	· 주2회 강습				
음악감상실	성 인	1인	1,000		· 1회 2시간	기 타	1. 성인은 대학생 이상, 청소년은 고등학생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 경우 공연장, 실내집회장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토·일·공휴일 포함) 3. 일반인의 경우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공연장, 실내집회장에 한함) 4.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00 이후 이용 시는 해당 기준 이용료를 적용한다. 5. 일반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6.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7. 회의실 및 강의실은 특별활동실, 분임토의실, 자치활동실, 프로그램실 등을 포함한다. 8. 프로그램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청소년	1인	500		· 1회 2시간				
음악연주실	성 인	1조	5,000		· 1회 2시간	기 타	1. 성인은 대학생 이상, 청소년은 고등학생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 경우 공연장, 실내집회장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토·일·공휴일 포함) 3. 일반인의 경우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공연장, 실내집회장에 한함) 4.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00 이후 이용 시는 해당 기준 이용료를 적용한다. 5. 일반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6.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7. 회의실 및 강의실은 특별활동실, 분임토의실, 자치활동실, 프로그램실 등을 포함한다. 8. 프로그램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청소년	1조	2,500		· 1회 2시간				
취미교실	성 인	1인		10,000~60,000	· 1월 강습료/각종 교육교재비	기 타	1. 성인은 대학생 이상, 청소년은 고등학생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 경우 공연장, 실내집회장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토·일·공휴일 포함) 3. 일반인의 경우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공연장, 실내집회장에 한함) 4.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00 이후 이용 시는 해당 기준 이용료를 적용한다. 5. 일반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6.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7. 회의실 및 강의실은 특별활동실, 분임토의실, 자치활동실, 프로그램실 등을 포함한다. 8. 프로그램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청소년	1인		10,000~30,000	이용자 별도부담				
X-게임	성 인	1인	2,000	40,000	· 1회사용/장비대여 별도	기 타	1. 성인은 대학생 이상, 청소년은 고등학생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 경우 공연장, 실내집회장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토·일·공휴일 포함) 3. 일반인의 경우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공연장, 실내집회장에 한함) 4.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00 이후 이용 시는 해당 기준 이용료를 적용한다. 5. 일반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6.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7. 회의실 및 강의실은 특별활동실, 분임토의실, 자치활동실, 프로그램실 등을 포함한다. 8. 프로그램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청소년	1인	1,000	20,000	· 1월 강습료/장비대여 별도				
전시실	성 인	1일	20,000			기 타	1. 성인은 대학생 이상, 청소년은 고등학생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 경우 공연장, 실내집회장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토·일·공휴일 포함) 3. 일반인의 경우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공연장, 실내집회장에 한함) 4.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00 이후 이용 시는 해당 기준 이용료를 적용한다. 5. 일반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6.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7. 회의실 및 강의실은 특별활동실, 분임토의실, 자치활동실, 프로그램실 등을 포함한다. 8. 프로그램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청소년	7일 이내	무료						
공 연 장		오 전	60,000		· 오전 08:00 ~ 12:00	기 타	1. 성인은 대학생 이상, 청소년은 고등학생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 경우 공연장, 실내집회장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토·일·공휴일 포함) 3. 일반인의 경우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공연장, 실내집회장에 한함) 4.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00 이후 이용 시는 해당 기준 이용료를 적용한다. 5. 일반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6.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7. 회의실 및 강의실은 특별활동실, 분임토의실, 자치활동실, 프로그램실 등을 포함한다. 8. 프로그램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오 후	70,000		· 오후 13:00 ~ 17:00				
		야 간	80,000		· 야간 18:00 ~ 22:00				
실내집회장		1회/3시간	60,000		· 기본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	기 타	1. 성인은 대학생 이상, 청소년은 고등학생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 경우 공연장, 실내집회장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토·일·공휴일 포함) 3. 일반인의 경우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공연장, 실내집회장에 한함) 4.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00 이후 이용 시는 해당 기준 이용료를 적용한다. 5. 일반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6.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7. 회의실 및 강의실은 특별활동실, 분임토의실, 자치활동실, 프로그램실 등을 포함한다. 8. 프로그램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회의실 및 강의실	성 인	1회/2시간	20,000		· 기본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		1. 성인은 대학생 이상, 청소년은 고등학생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 경우 공연장, 실내집회장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토·일·공휴일 포함) 3. 일반인의 경우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공연장, 실내집회장에 한함) 4.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00 이후 이용 시는 해당 기준 이용료를 적용한다. 5. 일반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6.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7. 회의실 및 강의실은 특별활동실, 분임토의실, 자치활동실, 프로그램실 등을 포함한다. 8. 프로그램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청소년	1회/2시간	1시간무료/ 이후2시간 10,000		· 기본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				

현행					개정안				
2. 부대시설사용요금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원)					(단위: 원)				
구분		기준	금액	비고	구분		월 강습료(1회 / 1시간 기준)		비고
							주 3회 이하	주 4회 ~ 6회 이하	
악기	가. 그랜드피아노	1회	50,000	·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1일은 2회까지 적용 (오전08:00~12:00, 오후12:00~17:00, 야간17:00~22:00)	체육시설 이용수업	일반인	70,000	106,000	
						청소년 이하	60,000	96,000	
음향	가. 마이크(유선)	1회(2개)	5,000	· 유선마이크 1개 추가 시 2,000원 추가징수	외국어	일반인	84,000	135,000	
						청소년 이하	75,000	125,000	
	나. 무선마이크	1회(2개)	6,000	· 무선마이크 1개추가 시 3,000원 추가징수	예체능	일반인	80,000	130,000	
						청소년 이하	70,000	120,000	
	다. 녹음료	1회(1개)	3,000	· 녹음료는 사용자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취미·교양 문화 등	일반인	92,000	145,000	
						청소년 이하	82,000	135,000	
	라. 콘트롤톤향기	1회(1식)	50,000	· 60분용 기준 1개 추가 시 동일금액 추가징수	상담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검사 필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청소년 사업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	
조명	가. 종합조명	1회	20,000	· 공연장사용에 한함 · 기본시설 전기사용료(무대, 객석조명료)를 일반조명이라 하고, 기본시설 이상(20KW)의 전기 사용전력에 대하여 종합조명이라 한다.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가. 체육시설 이용: 헬스, 농구, 탁구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나.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다. 예능·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G.X.프로그램, 무도 등의 영역 라. 그 밖의 취미·문화: 외국어, 예능·체능,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 의 영역 마. 상담: 개인·집단 상담 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바. 청소년사업: 동아리 활동, 학교 연계 활동, 진로 체험 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 행사, 특강 등 2. 강습료 감경 ※ 상담사업, 청소년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50퍼센트 감경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30퍼센트 감경 1) 교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그 밖의 할인은 시설 내부 지침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운영 시 드는 각종 교육재료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북 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며,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 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		
무대	가. 무대부대시설	1회	10,000	· 공연장사용에 한함 · 기본시설 전기사용료(무대, 객석조명료)를 일반조명이라 하고, 기본시설 이상(20KW)의 전기 사용전력에 대하여 종합조명이라 한다.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가. 체육시설 이용: 헬스, 농구, 탁구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나.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다. 예능·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G.X.프로그램, 무도 등의 영역 라. 그 밖의 취미·문화: 외국어, 예능·체능,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 의 영역 마. 상담: 개인·집단 상담 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바. 청소년사업: 동아리 활동, 학교 연계 활동, 진로 체험 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 행사, 특강 등 2. 강습료 감경 ※ 상담사업, 청소년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50퍼센트 감경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30퍼센트 감경 1) 교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그 밖의 할인은 시설 내부 지침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운영 시 드는 각종 교육재료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북 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며,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 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		
영사	가. 빔프로젝트	1회	10,000	· 조명기기는 외부에서 반입 사용할 때는 해당시설 종합조명 사용료에 준함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가. 체육시설 이용: 헬스, 농구, 탁구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나.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다. 예능·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G.X.프로그램, 무도 등의 영역 라. 그 밖의 취미·문화: 외국어, 예능·체능,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 의 영역 마. 상담: 개인·집단 상담 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바. 청소년사업: 동아리 활동, 학교 연계 활동, 진로 체험 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 행사, 특강 등 2. 강습료 감경 ※ 상담사업, 청소년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50퍼센트 감경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30퍼센트 감경 1) 교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그 밖의 할인은 시설 내부 지침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운영 시 드는 각종 교육재료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북 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며,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 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		
냉·난방료	가. 냉방	시간당		· 냉방은 6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화 시는 예외로 한다. ·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료 포함)는 시가에 의함 - 냉방사용료: 동력(kw)×전력단가(원) ×사용시간 - 난방사용료: {(동력(kw)×전력단가(원)) +(난방사용량(GK)×지역난방료(원))} ×사용시간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가. 체육시설 이용: 헬스, 농구, 탁구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영역 나.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다. 예능·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G.X.프로그램, 무도 등의 영역 라. 그 밖의 취미·문화: 외국어, 예능·체능,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 의 영역 마. 상담: 개인·집단 상담 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바. 청소년사업: 동아리 활동, 학교 연계 활동, 진로 체험 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 행사, 특강 등 2. 강습료 감경 ※ 상담사업, 청소년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50퍼센트 감경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30퍼센트 감경 1) 교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그 밖의 할인은 시설 내부 지침에 따른다. 3. 프로그램 운영 시 드는 각종 교육재료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체육센터, 북 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며,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 의 상한요금의 범위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고양시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환경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로 변경함.
- 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함(안 제4조).
- 다.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및 제22조).
- 라. 환경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 수립’에서 ‘20년마다 수립·5년마다 변경’으로 변경함(안 제10조).
- 마.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22조).
- 바. 환경정책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4).
- 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함(안 제23조제2항).
-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환경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31-8075-2644)

- 팩 스 : 031-8075-492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악취”를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발생되는”을 “발생하는”으로, “악취”를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따른 빛공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기여”를 “이바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동·식물”을 “동식물”로, “확보등 지역여건”을 “확보 등 지역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저감하며”를 “줄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폐기됨에 따라”를 “폐기되어”로, “환경오염의 저감을”을 “환경오염을 줄이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 를 “마련해야” 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환경보전계획” 을 “환경계획” 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 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환경

나.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중 “환경보전계획” 을 “환경계획” 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을 “하며,” 로 한다.

제13조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에 있어”를 “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를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환경관련사업”을 “환경 관련 사업”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 및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보전 및 정책”을 “환경정책”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으로 하고,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전에 따라 자연환경·대기환경·환경교육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5(중전의 제22조의4) 중 “환경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를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22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7(비밀의 유지)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중 “기타”를 “등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전의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고양시 환경보전계획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한 고양시 환경계획으로 본다.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팀장 성명	그린뉴딜정책팀장 나인숙
	담당자 성명·전화	조영정 031-8075-2644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고양시 환경기본 조례</u>	<u>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③ (생략)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제1조(목적)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 ----- ----- -----. 제2조(기본이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4조(정의) ----- ---뜻은-----. 1. -----이란----- -----. 2. -----이란----- ----- ----- -----. 3. -----이란-----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 4. -----이란-----그 밖 에-----발생하는-----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 5. -----이란----- ----- -----

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 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 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생 략)

1.~2. (생 략)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9. (생 략)

10.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생 략)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6. -----이런-----

-----.

7. -----이런-----

-----이바
지-----.

제5조(시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동식물-----
-----확보 등 지역 여건-----

4.~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줄이며-----

--.

③ -----
-----그 밖의-----폐기
되어-----환경오염을 줄이기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② (생략)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4. (생략)

제8조(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환경백서)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장 환경보전계획 및 시책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4.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수립 또는

제7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
-----.

1.~4.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 ①

-----마련해야-----.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환경백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제2장 환경계획 및 시책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환경

나.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계획수립 지침)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행

2. (생 략)

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11조(계획수립 지침) -----

-----환경계획-----
-----하며,-----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

-----마련해야-----.

제14조(자연환경보전) ① -----

-----할
때-----
-----.

1. -----

-----범위
에서-----

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18조(환경 보전기금의 설치) ① (생략)

1.~3. (생략)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 (생략)

제22조(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4. (생략)

<신설>

5. 그 밖의 환경보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② -----

-----마련해야-----.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

-----마련해야-----.

② -----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마련해야-----.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

-----필요한-----
-----마련해야-----.

②~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환경 보전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환경 관련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심의

의·자문-----
-----.

1. 환경계획의 수립 및 변경-----

2.~4. (현행과 같음)

5.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6. -----환경정책-----

<신 설>

제22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2조의5(수당 등) (생 략)

<신 설>

제23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제24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제22조의4(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5(간사) -----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2조의6(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22조의7(비밀의 유지)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시민참여) ① -----

-----마련해야-----.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환경교육 및 홍보) -----
-----등 그 밖의-----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u><삭 제></u>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 7. 21. 시행) 사항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라. 개방화장실 개방시간 및 지정 기간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
- 마.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자원순환과

- 전 화 : 자원순화과 자원순환정책팀(031-8075-2685)

- 팩 스 : 031-8075-492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복지증진 도모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용 위생용품 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다만, 민간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관리인 부재, 재정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

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 또는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개방화장실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편의용품
2. 안전시설 설치비 및 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줄 것
-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제17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영 제6조 및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9조(준수사항) 제18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조사 등
2.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
3.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4. 이동화장실 관리
5.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6. 공중화장실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1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부서장(직위) 성 명	자원순환과장 안 명 렬
	팀 장(직위) 성 명	자원순환정책팀장 신 각 식
	담당자 성명 · 전화	윤 희 경 (031-8075-2685)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단위 : 만원)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5	10	20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소 속					
설치 및 관리 주체	설치 주체	설 치 년 도				관 리 책 임 공무원		직 급					
	관리 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비고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 수)		CCTV (설치 수)		비고 (명칭 및 설치 수)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 신고		처리기간					
				☐ 변경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성용	여성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 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고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 증명서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성용	여성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고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음향시설·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현행	개정안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다. 6. 대변기 칸막이(남성, 여성)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고양이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u><신 설></u> <u>제7조(관리인의 교육)</u>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u>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u> ①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u>제8조(관리인에 대한 교육)</u>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u>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 수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 또는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개방화장실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7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법 제10조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법 제21조제2항제1호	20	40	60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	법 제21조제2항제2호	10	20	3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법 제21조제2항제1호	20	40	6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3호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법 제21조제2항제2호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4호	20	40	6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3호	20	30	4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5	10	2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소 속							
설치 및 관리 주체	설치 주체											설 치 년 도	관 리 책임 공무원	소 속				
	관리 주체													직 급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 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내부	외부	기 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 수)		CCTV (설치 수)		비고 (명칭 및 설치 수)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소 속							
설치 및 관리 주체	설치 주체											설 치 년 도	관 리 책임 공무원	소 속				
	관리 주체													직 급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내부	외부	비고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 수)		CCTV (설치 수)		비고 (명칭 및 설치 수)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강화하고 특색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경관관리 계획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 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4조).
- 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을 확대 및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경관심의 사전 검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 및 별표).
- 라. 경관 심의 대상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 마. 건축물의 경관 자문 대상을 확대 및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7조).
- 바. 우수 경관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
-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디자인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디자인팀(031-8075-2786)

- 팩 스 : 031-8075-490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고양시 경관위원회”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유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를 제24조의2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모의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시설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4.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제2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위배되지 아니하고”를 “저촉되지 않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주변 경관 및 인접 가로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유도과 경관 심의 재심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관 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요청하는 사항”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3.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민간건축물 중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3. 외부를 재도색하는 공동주택(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도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제3항 중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7장(제3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우수 경관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경관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경관조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고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우수경관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경관문화상을 시상할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공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경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 경관 조성에 이바지한 시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별표 중 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4. 그 밖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허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도로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7층 이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	--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대상이 된다.
2.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기준에 미달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던 건축물이 규모를 증축하여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입안자	과장명	도시디자인담당관 김 명 진
	팀장명	경관디자인팀장 유 진 상
	담당자 성명·전화	김 용 우 031-8075-2786

[별지 제5호서식]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
사업구분	구 분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그 밖의 사항()
	대상시설	
	사 업 명	
	사업위치	
신청내용		
「고양시 경관 조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경관 사전 검토 도서 - 경관체크리스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u>고양시 경관위원회</u> (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는 것을 말한다.	4. ----- ----- ----- ----- <u>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경관위원회</u>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생략)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신설>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설>	②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유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모의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시설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u>제24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u> <u>1.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경관지구 건축물</u> <u>2.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u> <u>3.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u> <u>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제4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건축물</u> ② (생략) ③ (생략) <u>1.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기존면적, 층수,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u> <u>2. (생략)</u> <u><신설></u> <u>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생략)</u>	<u>시설로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u> <u>4.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u> <u>제24조의2(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1. -----저촉되지 않고-----</u> ----- ----- ----- <u>2. (현행과 같음)</u> <u>④ 시장은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주변 경관 및 인접 가로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유도과 경관 심의 재심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관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할 수 있다.</u> <u>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현행과 같음)</u>
---	---

1.~2. (생략)

<신설>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생략)

1. (생략)

2. 각종 심의 대상 민간건축물 중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신설>

3. (생략)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4. -----
-----요청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민간건축물 중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3. 외부를 재도색하는 공동주택(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도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② (생 략)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처리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 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⑤ (생 략)	제2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경관위 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 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 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u>경관위원회</u>----- -----. ④~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7장 보칙</u>
<신 설>	제33조(우수 경관 홍보 및 포상) ① 시 장은 경관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경관 조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 을 선정하고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 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우수경관문화상 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경관문화상을 시 상할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공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경관의 활성화를 위하 여 매년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 경관 조성에 이바지한 시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 「고양 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별표] <u>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제24조 관련)</u> <table border="1" data-bbox="170 389 1086 1050"> <tr> <th>구분</th><th>건축물의 종류</th></tr> <tr> <td>1~2.</td><td>(생략)</td></tr> <tr> <td>3. 공공건축물</td><td>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td></tr> <tr> <td>4. 그 밖의 건축물</td><td>「고양시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td></tr> </table> ※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건축물의 종류	1~2.	(생략)	3. 공공건축물	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4. 그 밖의 건축물	「고양시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별표] <u>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제24조의2 관련)</u> <table border="1" data-bbox="1120 389 2036 1050"> <tr> <th>구분</th><th>건축물의 종류</th></tr> <tr> <td>1~2.</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3. 공공건축물</td><td>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td></tr> <tr> <td>4. 그 밖의 건축물</td><td>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허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도로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7층 이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td></tr> </table> 비고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대상이 된다. -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기준에 미달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던 건축물이 규모를 증축하여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분	건축물의 종류	1~2.	(현행과 같음)	3. 공공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4. 그 밖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허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도로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7층 이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구분	건축물의 종류																
1~2.	(생략)																
3. 공공건축물	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4. 그 밖의 건축물	「고양시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구분	건축물의 종류																
1~2.	(현행과 같음)																
3. 공공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4. 그 밖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허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도로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7층 이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신 설>

[별지 제5호서식]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〇〇)
사 업 구 분	구 분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그 밖의 사항()
	대상시설	
	사 업 명	
	사업위치	
신 청 내 용		
「고양시 경관 조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사전 검토 도서 2. 경관체크리스트		

규제영향분석서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도시디자인 담당관	작성자	성명	김용우
	담당관	김명진		직급	시설6급
	팀장	유진상		연락처	031-8075-2786
				이메일	pam102@korea.kr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건축물의 경관 심의													
2. 구분	신설	강화	존속기한연장	내용심사										
		○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도시디자인 담당관 경관디자인팀													
	담당관 : 김명진 / 팀장 : 유진상 / 담당자 : 김용우													
4. 근거법령명 등	○ 경관법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건축물 건축 및 대수선을 시행하려는 건축주 ○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시행하려는 건축주													
6. 규제존속기한	☐ 유 ☒ 무													
7.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정비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허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도로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7층 이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 기존 규제와 강화되는 조례 조문의 대비표													
	<table><tr><th colspan="2">현행</th></tr><tr><td colspan="2">[별표]</td></tr><tr><td colspan="2">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제24조 관련)</td></tr><tr><td>구분</td><td>건축물의 종류</td></tr><tr><td>4. 그 밖의 건축물</td><td>「고양시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td></tr></table>				현행		[별표]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제24조 관련)		구분	건축물의 종류	4. 그 밖의 건축물	「고양시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현행													
	[별표]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제24조 관련)														
구분	건축물의 종류													
4. 그 밖의 건축물	「고양시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	
[별표]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제24조의2 관련)	
구분	건축물의 종류
4. 그 밖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허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도로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7층 이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대상이 된다. 2.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기준에 미달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던 건축물이 규모를 증축하여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우리시 가로경관 및 경관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경관관리의 필요성 대두

- 특례시로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 이용 건축물 및 도로 조망의 건축물의 경관을 고양시 경관계획에 따라 도시미관 관리를 통하여 품격도시 건설

*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 ↳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물 미관과 주변과의 연계성등 복합적인 검토를 하여 건축물의 심미성과 공공성 확대

* 건축물 외관변경에 따른 대수선 사항 경관심의 확대

- ↳ 「고양시 경관계획」에 맞지 않는 계획으로 건축주 임의대로 외관을 변경할 경우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외관의 색채 또는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시미관 개선

*** 도로법에 따른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경관심의 강화**

↳ 도로 조망을 기본으로 개발되어 지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강화하여 「고양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있는 계획을 유도하여 주변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이루어 도시미관 향상 기여 필요

(자동차 및 보행의 주요 이동 도로의 미관향상 통한 도시가치 증진)

- 건축심의 대상으로 국한 되어 경관심의를 진행하게 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중 경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누락 되는 실정으로 도시 경관 관리에 악영향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우리 시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강화하고 특례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을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확대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 유 ☒ 무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비용) 심의 자료 작성 및 심의 의견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 발생
- (편익)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통한 도시미관의 개선, 주거환경 개선, 공공성 확대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으로 고양시민들에게 편익 제공
- (비용과 편익 비교)
 -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등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심의 시 제출자료와 심의 내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건축주의 건축물 경관개선을 통하여 도시의 이미지상승과 더불어 공공성 증대와 사적 자산가치 증대가 이루어질 것을

판단됨.

- 이를 통한 고양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이 개선되어 명품도시 건설로 공적자산과 사적자산의 가치 상승을 통한 도시가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경쟁제한적 요소·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없음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타 시·군 건축 조례 사례

구 분	그 밖의 건축물 심의 대상
용인시	1. 경량전철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200미터 이내 2. 도로시설주변 건축물(7층 이상 또는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성남시	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지상 3개층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 숙박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기존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축 및 대수선하는 건축물
부천시	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500세대(호) 이상인 건축물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한하며, 동일 건축물 내 두 용도가 복합된 경우 세대·호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1. 색채경관계획(재도색 포함) 2. 연면적 5,000㎡ 이상(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6. 규제의 집행 가능성(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등)

- 최근 5년간 건축허가 현황 분석 결과 364건 이며 이중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합계는 247건임.
- 경관조례 변경으로 경관위원회 심의 건수가 년 20~30건 사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달 약 6~8건의 심의 안건 상정이 예상됨

【 최근 5년간 건축허가(대수선포함) 현황 】

(2018.01.~2022.12.)

연면적(㎡)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합 계	364	54	73	73	82	82	

【 최근 5년간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현황 】

(2018.01.~2022.12.)

연면적(㎡)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합 계	247	25	54	61	45	62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2023년 8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2023년 8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5. ~ 2023. 9. 26.(21일간)
3. 공고대상 : 200수814* 등 10대(소유자, 이해관계인)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2팀 (☎031-8075-476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202308) 1부.

2023. 9. 5.

고양시장

운행권지시대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소유자명	사용권자주소	용도	불법 운행한 사유	불법 운행한 상세사유	등록관청명	등록일
등록	209승814*	WDCN356K86A046705	S350	정*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광복로 ***(복석동)	개인용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	아>불법 차량 거래후 명의이전을 하지않고 운행하고 있음	경기도 고양시	2023.08.31
등록	23CJ454*	WDBUF61J13A246627	BENZ E240	유*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산로**1번길 *1, 나동 **2호(행산동)	개인용	기타	익년 종합검차변회차가 확인인 명의를 불려 차량을 구입 부친 고도스 수령 차량 명의를 부수고 해당 운전자로 실행함	경기도 고양시	2023.08.30
등록	51저178*	KMABE511BDT586890	토닝	정*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원산로 *6, **6호(백석동, ***)	개인용	기타	차이불계 차량을 팔려수정하는데 연식도 일치 않고 차량을 변납하지 않음	경기도 고양시	2023.08.29
등록	31CJ123*	KMRH881XP4U134665	테라칸(TERRACAN)	김*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2번길 *4-1, D동 **2호(관산동, **주목)	개인용	기타	해부자가 집을 나가면서 차량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감 차량 변납회정하였으나 변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행하고 있음 차량 가지고 온다고 하여 운행금지 해지 하였으나 약속을 장기위 함음함	경기도 고양시	2023.08.28
등록	68L192*	KMAD6814BJS175878	스톤닉	김*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번길 *7, 202동 **1호(내유동, ***)	개인용	기타	차량이 중고차 판매주 수리할부분이 있다고 하고 이후에 차량을 안도 받지 않음 이후에 차량의 소재지 및 보유 및 운전권회정하여 본인으로 운행할것을 신청함	경기도 고양시	2023.08.22
등록	26J206*	WAUJZZ9UBER028606	Q3 2.0 TDI quattro	김*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번길 *7, 202동 **1호(내유동, ***)	개인용	기타	판매해준다고 차량을 가져가 판매 및 명의 이전도 하지않 고 보유 및 운사 권태로가 본인 계속 부경하는 상황에서 차 량의 소유권도 원수라는 차량의 운행할것을 신청함	경기도 고양시	2023.08.22
등록	227해120*	KMALC41BBLA222747	K7	송*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그늘길**번길 *3-7, 111동 **1호(관산동, 해**)	개인용	기타	아>확이 송>양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음 아>에게 차원의 명의를 준리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전 한다는 불박하고 명의(이름)을 받고 있지 않음	경기도 고양시	2023.08.18
등록	25*461*	5LMEU8HX4ZJ08235	에비에이타	김*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75번길 *0-21, **6호(장항동)	개인용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매매주 매수자가 하자주 차량에 이연등록을 승인 함음	경기도 고양시	2023.08.09
등록	197저376*	KMHF141DBNA493129	그랜지(GRANDEUR)	이*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 41*동 **2호(주엽동, **마음)	개인용	기타	해부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차량의 명의이전을 해 나 차량을 변납하려고 도함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무단으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차량 운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나	경기도 고양시	2023.08.08
등록	394스400*	SALWA2K2F5FA522378	레인지로버 스포츠	장*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도 **, 401동 **8호(만원동, **마음)	개인용	개인간의 채무관계	어느 지안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조건으 로 차량을 담보로 받았으나, 은행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 고, 수차례 미납, 위반종지서가 날아와 운행하지 말라고 하 였으나,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2023.08.07